

의안번호	제 39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13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99

제출연월일 : 2020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오송첨복단지에 기 입주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와 함께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충북대에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 건립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대학과 병원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각하는 사항임.
-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저렴한 임대료의 부지 제공으로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오창벤처임대단지에 최초 입주 후 15~20년(20년 만료)이 된 입주기업에 토지를 매각하여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도유림을 연차적으로('19~22년간, 500ha) 확대조성 하고자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안의결 되어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과 매입대상지 조정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안》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65-6 외 21필지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165-6 외 11필지
사업기간	· 2020. 1. ~ 12.	· 변경없음
규 모	· 112ha	· 180ha(증 68ha)
사 업 비	· 30억원(도비 100%)	· 변경없음

□ 재산의 처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 건립부지 매각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
 - 매각규모 : 4,950m² ※ 연제리 659번지 8,250m² 를 분할하여 4,950m² 매각
 - 매각시기 : '20. 5월중
 - 재산가액 : 1,032,177천원(208천원/m², '20. 5. 31기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 매 수 자 :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건립부지 매각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
 - 매각규모 : 3,300m²
 - ※ 연제리 659번지 8,250m² 를 분할하여 3,300m² 매각(659-2번지 부여 예정)
 - 매각시기 : '20. 5월중
 - 재산가액 : 688,365천원(208천원/m², '20. 5. 31기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 매 수 자 : 충북대학교병원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2-5 등 10필지
- 매각규모 : 36,121.7㎡
- 매각시기 : '20. 4월~
- 매각금액 : 감정평가액 ※ 재산가액(공시지가) 9,196,705천원
- 매각대상

연번	소재지		면적(㎡)	지 목	매 수 자	재산가액(천원)
	읍면동	번지				
계	10필지		36,121.7			9,196,705
1	오창읍 각리	642-5	2,438.5	공장용지	(주)그린광학	656,444
2	“	641-2	4,624.8	“	(주)노바렉스	1,147,413
3	“	641-13	3,438.7	“	(주)마크로케어	861,394
4	“	641-4	4,850.6	“	(주)메디톡스	1,226,717
5	“	641-5	3,422.5	“	SFC(주)	865,550
6	“	643-4	3,468.7	“	(주)엔에스	933,774
7	“	641-3	4,830.7	“	(주)엔푸드	1,198,497
8	“	641-11	3,437.2	“	(주)우림	861,019
9	“	641-12	3,439.3	“	유진광학	861,545
10	“	642-6	2,170.7	“	(주)흙살림	584,352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변경)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5필지	1,015,619	1,762,245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08-7	1,240	57,040	2020	도유림확대조성	하기복	변경 매입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 산58	166,612	693,289	"	"	유혜경 외 1	"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 산56-2	32,231	137,304	"	"	"	"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산67-1	645,354	716,343	"	"	박정념	"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산81	170,182	158,269	"	"	"	"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20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4)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2필지	44,371.7	10,917,247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	4,950	1,032,177	2020. 5.	충북대 의과대학 제3의학관 건립	충북대학교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	3,300	688,365	2020. 5	충북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 건립	충북대병원	
	건물							
	기타							
2	토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2-5	2,438.5	656,444	2020. 4	기업활동지원	(주)그린광학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2	4,624.8	1,147,413	"	"	(주)노바렉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13	3,438.7	861,394	"	"	(주)미크로케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4	4,850.6	1,226,717	"	"	(주)메디톡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5	3,422.5	865,550	"	"	SFC(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3-4	3,468.7	933,774	"	"	(주)엔에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3	4,830.7	1,198,497	"	"	(주)엔푸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11	3,437.2	861,019	"	"	(주)우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1-12	3,439.3	861,545	"	"	유진광학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42-6	2,170.7	584,352	"	"	(주)흙살림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